

군산시 고시 제2017-131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 같은법시행령 제27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하고 같은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등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6일

군 산 시 장

1. 사업명 : 군산 조촌동센트럴파크지역주택조합아파트 신축공사

2. 사업주체(변경없음)

가. 지역주택조합

1) 명 칭 : 센트럴파크지역주택조합

2) 조합장 : 오 규 만

3) 주 소 : 전라북도 군산시 변영로 196

나. 공동사업주체

1) 명 칭 : 주식회사 제일건설

2) 대표자 : 윤 여 응

3) 주 소 :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 124 (중앙동2가)

3. 사업내용

가. 사업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동 769-4번지의 9필지

나. 주택구분 : 민영주택

나. 대지면적 : 9,356.5000㎡

다. 건축면적 : 6,528.3325㎡

라. 연 면 적 : 78,625.8187㎡

마. 건축규모 : 아파트 4동 36층, 480세대

- 전용 84.8869㎡ 251세대

- 전용 84.9963㎡ 229세대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

사. 사업비 : 111,274,477천원

아. 사업기간 : 2013년 12월 16일 ~ 2017년 10월 31일

4. 사업계획 주요 변경 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대지위치	조촌동 769-4외 9필지	조촌동 769-4외 17필지	
대지면적	9,356.7m ²	9,356.5m ²	감 0.2m ²
사업기간	2013.12.16~2017.08.31	2013.12.16~2017.10.31	
조경시설	1,483.63m ²	1,557.55m ²	증 73.92m ²

※ 분야별(건축, 토목, 조경) 경미한 변경 등

5. 사업계획변경승인일 : 2017.10.13.

6. 설계도서 : 변경승인설계도서와 같음

7. 주택법 제19조 1항에 의한 고시 :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에 관한사항(붙임)

8. 기타 자세한 사항의 관계도면 및 서류는 군산시청(주택행정과 ☎063-454-3712)에 비치되어 있으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I.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43	조촌동 주상복합아파트 지구단위계획구역	군산시 조촌동 769-4번지 일원	10,037.2	감) 0.1	10,037.1	

나. 변경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위치	면적(㎡)	결정 사유
변경	43	군산시 조촌동 769-4번지 일원	○면적변경 - 10,037.2㎡ → 10,037.1㎡ (감 0.1㎡)	지적분할에 의한 확정면적으로 정정

2.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나.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획지 번호	위 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1	10,037.2	감) 0.1	10,037.1	①	군산시 조촌동 769-4번지 일원	9,356.7	감) 0.2	1) 9,356.5	주상복합용지
					②	군산시 조촌동 769-1번지 일원	276.2	-	2) 276.2	도로용지 (대로1-3호선)
					③	군산시 조촌동 769-5번지 일원	212.6	증) 0.1	3) 212.7	도로용지 (소로3-245호선)
					④	군산시 조촌동 768-1번지 일원	191.7	-	4) 191.7	도로용지 (소로2-255호선, 소로3-245호선, 소로3-4-88호선)

다.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라. 교통처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II.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고시도 : “실음생략”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에 관한 사항

1. 사업시행지 : 군산시 조촌동 769-4번지 외 6필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1)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2) 명칭 : 군산 조촌동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에 따른
도시계획도로(대로1-3호선 외 3개 노선) 개설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

○ 면적변경

: 소로3-245호선 : 217.0㎡ → 217.1㎡ (증 0.1㎡)

: 전체 시행면적 680.5㎡ → 680.6㎡ (증 0.1㎡)

구분	노선명			결정조서		기개설조서		금회시행조서			증·감 (㎡)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개설폭원 (m)	연장 (m)	개설폭원 (m)	연장 (m)	면적 (㎡)		
도로	대로	1	3	35~38	2,090	35	2,090	3	106	273.6	-	확폭구간 개설
	소로	2	255	8	114	8	114	-	-	11.6	-	가각변경구간 개설
	소로	3	245	6~10	92	6	92	4	56	217.1	증 0.1	확폭구간 개설
	소로	3	4-88	4~6	414	4	414	2	117	178.3	-	확폭구간 개설
계	4개노선				2,710		2,710		279	680.6	증 0.1	

4. 사업시행자

- 전라북도 군산시 번영로 196(조촌동), 센트럴파크지역주택조합 대표자 오규만
- 익산시 익산대로 124(중앙동2가), 주식회사 제일건설 대표자 윤여웅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가. 당초 : 2013.12.16. ~ 2017.08.31.

나. 변경 : 2013.12.16. ~ 2017.10.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등의 조서 : 붙임조서 참조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계제 실음생략

8. 관계도서 : 계제 실음생략

붙임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 대로1-3호선

순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리내용	
1	군산시 조촌동	769-6	대	61.8	59.2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부산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	-	-	
2	군산시 조촌동	769-7	대	64.0	64.0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부산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	-	-	
3	군산시 조촌동	769-8	대	86.8	86.8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부산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	-	-	
4	군산시 조촌동	769-9	대	261.4	63.6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부산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	-	-	
계	4필지			474.0	273.6						

○ 소로2-255호선

순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리내용	
1	군산시 조촌동	768-4	대	93.1	9.0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부산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	-	-	
2	군산시 조촌동	769-6	대	61.8	2.6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부산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	-	-	
계	2필지			154.9	11.6						

○ 소로3-245호선

순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리내용	
1	군산시 조촌동	768-5	대	98.6	4.4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부산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	-	-	
2	군산시 조촌동	769-9	대	261.4	197.8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부산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	-	-	
3	군산시 조촌동	813-2	도	14.9	14.9	군산시					
계	3필지			374.9	217.1						

○ 소로3-4-88호선

순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리내용	
1	군산시 조촌동	768-4	대	93.1	84.1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부산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	-	-	
2	군산시 조촌동	768-5	대	98.6	94.2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부산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	-	-	
계	2필지			191.7	178.3						

군산시 공고 제2017-1708호

공 고

군산시 공인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공인신조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6일
군 산 시 장

1. 신규공인등록 연월일 : 2017. 10. 16.
2. 신규등록공인 및 인영(3점)

구분	공인명	글씨·규격	인 영	재료	등록사유	관리부서
공 인 신 조	군산시장의인 민원사무전용	한글전서체 3.0*3.0		특수우레탄	통합민원 발급기 신규도입	민원 봉사과
	군산시장의인 나운3동 민원사무전용	한글전서체 3.0*3.0		특수우레탄	통합민원 발급기 신규도입	나운3동
	군산시나운3동장인 민원사무전용	한글전서체 2.1*2.1		특수우레탄	통합민원 발급기 신규도입	나운3동

군산시 공동 및 일반주택 수도 계량기 검침업무 민간위탁 사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지침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7년 10월 16일

군산시장

본 동 선



군산시 예규 제34호

군산시 공동 및 일반주택 수도 계량기 검침업무 민간위탁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지침

군산시 공동 및 일반주택 수도 계량기 검침업무 민간위탁 사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도계량기 검침 및 점검업무

가. 공동 및 일반주택의 상수도 계량기를 정례 검침일에 검침하여 지침 및 사용량을 계량기 검침부에 기록하여 군산시수도사업소장(이하 “위탁자” 라함)에게 제출하는 업무

나. 수도계량기 정상여부 점검업무(불 회전, 문자판불명, 칩 탈락, 유리파손, 동과등 이상이 있을 때는 “위탁자”에게 즉시 통지하는 업무)

2. 고지서 교부

가. 공동 및 일반주택의 상·하수도요금, 물 이용부담금 고지서 및 독촉장(계고장 포함) 교부

3. 기타 부대업무

가. 급수사용자 명의변경 및 급수업종 변경

나. 수용가 민원사항(검침, 부과착오) 처리 및 통지

다. 상·하수도 사용료(체납 포함) 징수 독려

제3조의 제목 “(검침원의 자격)”을 “(검침원 선발)”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군산시 시민으로서 수도검침을 희망하며 사무능력이 있는 60세 이하인 자로서

(만 60세에 달한 자는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함) 공고일 현재 검침 해당 지역(읍·면·동)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지원자를 우선 선발하고 거주자 미달시 인접 거주자, 기타 지역 거주자 순으로 선발하되, 모집대상 인원의 1/3은 저소득층 지원자를 우대 채용한다(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 저소득층 자립지원 고려)

제3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검침원 지원 신청자는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자기소개서(별지 제2호서식), 개인정보이용동의서(별지 제10호서식), 취업용건강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제4호 중 “ “을” 이” 를 “ “수탁자” ” 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 “을” ” 을 “ “수탁자” ” 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 “을” 은” 을 “ “수탁자” 는” 으로, “ “갑” ” 을 “ “위탁자” ” 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 “을” 은” 을 “ “수탁자” 는” 으로, “ “을” 이” 를 “ “수탁자” 가” 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 “을” ” 을 “ “수탁자” ” 로, “ “을” 이” 를 “ “수탁자” 가” 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 “을” 은” 을 “ “수탁자” 는” 으로, “ “갑” ” 을 “ “위탁자” ” 로 한다.

제8조 각 목 외의 부분 중 “ “을” 이 “갑” ” 을 “ “수탁자” 가 “위탁자” ” 로, “ “을” 은 “갑” 이” 를 “ “수탁자” 는 “위탁자” 가” 로 하고, 같은 조 나목 제2호 중 “ “갑” ” 을 “ “위탁자” ” 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 “갑” 과 “을” 이” 를 “ “위탁자” 와 “수탁자” 가” 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 “을” 은” 을 “ “수탁자” 는” 으로, “ “갑” ” 을 “ “위탁자” ” 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 “갑” 은” 을 “ “위탁자” 는” 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 “갑” 이” 를 “ “위탁자” 가” 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 “을” 이” 를 “ “수탁자” 가” 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 “을” 이 “갑” 이” 를 “ “수탁자” 가 “위탁자” 가” 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 “갑” 이” 를 “ “위탁자” 가” 로, “ “을” 이” 를 “ “수탁자” 가” 로 하며, 같은 호 바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사목 및 아목을 각각 바목 및 사목으로 하며, 같은 호 바목(중전의 사목) 중 “ “을” ” 을 “ “수탁자” ” 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 “갑” ” 을 “ “위탁자” ” 로 한다.

제12조 중 “ “갑” 은 “을” ” 을 “ “위탁자” 는 “수탁자” ” 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 “갑” 은” 을 “ “위탁자” 는” 으로, “ “을” ” 을 “ “수탁자” ” 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 “갑” 은 “을” 이 “갑” ” 을 “ “위탁자” 는 “수탁자” 가 “위탁자” ” 로, “ “갑” 과” 를 “ “위탁자” 와” 로 한다.

제14조 중 “ “갑” 은 “을” ” 을 “ “위탁자” 는 “수탁자” ” 로 한다.

제15조제2호 본문 중 “ “갑” “을” ” 을 “ “위탁자” “수탁자” ” 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 “을” 은” 을 “ “수탁자” 는” 으로, “추천서는” 을 “계약은” 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수도검침원 지원신청서

성 명				사 진 (3.5×4.5 cm) 1매
생년월일 (성별)				
주 소				
연 락 처		휴 대 폰		
차량/이륜차 보유 및 운행여부				
기타 가점항목				

본인은 군산시 수도과 수도계량기 검침원 채용 모집에 지원 ·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군산시 수도사업소장 귀하

접 수 증

(군산시 수도과 수도계량기 검침원 채용 지원 신청)

접 수 번 호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년 월 일

군산시 수도사업소장

[별지 제3호서식]

수도계량기 점검업무 민간위탁 계약서(제10조 관련)

상수도계량기 점검 위탁업무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군산시 수도사업소장(이하 “위탁자” 라 한다)과 위탁점검 수탁인(이하 “수탁자” 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위탁자”는 상수도계량기 점검 및 점검업무와 고지서 교부(위탁업무)를 “수탁자”에게 취급하게 하고 위탁수수료를 지급함으로써 “수탁자”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한다.

제2조(위탁업무) 본 계약에서 “수탁자”가 담당 수행할 위탁업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계량기 점검 및 점검업무

- 가. 각 세대별 상수도계량기를 정례 점검일에 점검하여 지침 및 사용량 수탁자 점검부에 기재하여 “위탁자”에게 제출하는 업무
- 나. 수도계량기 정상여부 점검(불 회전·문자판불명·침 탈락·유리파손·동과등)하여 이상이 있을 때 “위탁자”에게 즉시 통지하는 업무
- 다.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포함) 징수 독려

2. 고지서 교부

- 가. 각 세대별 상·하수도사용료, 물이용부담금고지서 및 독촉장(계고장포함) 교부

3. 기타 부대업무

- 가. 급수사용자 명의변경 및 급수업종 변경업무
- 나. 수용가 민원사항(점검, 부과착오) 처리 및 통지업무

제3조(수도계량기 점검사항 등 제출) “수탁자”는 매월 정례 점검일에 수도계량기를 점검 한 후 급수사용량과 지침을 점검부에 기재하여 점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상·하수도사용료, 물이용부담금의 적용)

- 1. 일반주택 : “위탁자”는 “수탁자”가 점검 및 조사한 각 세대별 급수사용량에 의하여 산출된 요금을 사용료로 산정한다.
- 2. 공동주택
 - 가. “위탁자”는 “수탁자”가 점검한 공동주택 주 계량기 및 각 세대별 급수 사용량에 의하여 산출된 사용료와 공동사용분 사용량을 사용료로 산정한다.

나. 급수사용량 중 공동사용 분에 대한 상·하수도사용료의 산출은 주계량기 통과량에서 세대별 합산량을 제외한 사용량을 적용한다.

제5조(요금의 고지)

1. “위탁자”는 제4조에 의하여 계산된 상·하수도사용료, 물이용부담금 고지서를 매월 고지서로 “수탁자”에게 교부하고 “수탁자”는 각 수용가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상·하수도사용료, 물이용부담금 고지서는 수도계량기 점검 익월로 한다.

제6조(위탁수수료의 지급)

1. 위탁수수료는 「군산시 공동 및 일반주택 수도계량기 검침업무 민간위탁 사무처리지침」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월별로 수탁자의 업무처리 건수를 검수하여 위탁수수료를 정산 지급한다.
가. 일반주택 : 급수전당 800원으로 한다.
나. 공동주택 : 급수전당 350원으로 한다.
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검침구역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매월 50,000원부터 150,000원까지의 교통보상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2. 검침구역의 특성에 따라 검침전수의 증·감이 될 수 있다.
3. 위탁계약 검침구역 내에(신·증설이나 폐전 등) 검침 전수의 증·감이 있을 경우 변경 계약하지 않고 실제 검침 전수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한다.
4. 위탁수수료는 매월 세대별고지서 배부 및 익월분 검침 완료 후 “수탁자”가 청구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5일째 되는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로 한다.(가능한 한 매월 25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업무수행 중 책임한계) 위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수탁자”의 업무 및 책임한계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1. “수탁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탁자”의 제반 관계규정과 “위탁자”의 요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업무 수행 중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수탁자”의 책임으로 한다.
3. “수탁자”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제반 안전사고는 “수탁자”가 책임을 진다.
4. “수탁자”는 업무 수행에 있어 본 계약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수용가에 제반 요청 사항이나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손해배상)

1.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다음과 같은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수탁자”는 “위탁자”가 산정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 가. 고의, 과실 또는 의무 태만으로 인하여 수용가의 건물 및 시설 훼손, 누진요금 등 재산상의 피해가 있을 때
 - 나.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상·하수도, 물이용부담금 등 기타 수수료의 수수료의 징수를 면하게 하거나 방조 또는 묵인한 때
 - 다. 검침부 및 고지서 분실·손괴 등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2. 전 항의 손해배상은 “위탁자”의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배상금의 납부 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

제9조 (양도금지) “수탁자”는 어떤 경우에도 상수도검침에 관한 운영권을 매매, 대여, 상속, 증여, 신탁 등을 하거나 일체의 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10조(계약의 해약)

1. “수탁자”가 본인의 사정에 의하여 검침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1개월 전에 문서로서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 가. 계약이행 상대가 본 계약 조항대로 이행 가망이 없다고 “위탁자”가 인정한 때
 - 나. “수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때
 - 다. “수탁자”는 “위탁자”가 요구하는 서류제출 기타 협조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 하거나 고의로 지연한 때
 - 라. “위탁자”가 정당한 이유로 본 계약의 해약을 요구하여 “수탁자”가 그 정당성을 인정한 때
 - 마. “위탁자”의 기구의 개편, 제도의 변경 기타 부득이한 형편이 있을 때
 - 바. 위탁검침원 근무평정규정에 의거 수시로 평정수탁자 실시, 계약만료일 이전이더라도 70점미만으로 평정된 때
 - 사.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폐전되어 기준 계약전수가 50%이하 감소되어 업무효율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위탁자”의 판단이 있을 때
3. 계약 해지 시에는 검침업무사항에 지장이 없도록 15일 이내에 제반 서류 및 각 세대 점검사항을 “위탁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관계법령 및 직무와 관련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자질향상 및 친절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보증금)

1. “위탁자”는 검침업무의 건전한 운영과 업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보증하기 위하여 “수탁자”로부터 300만원 금액의 보증보험증서(이행지급보증증권)를 예치토록 하여야 한다.
2. “위탁자”는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예치한 보증보험증서(이행지급보증증권)를 기타 사유로 계약이 취소되었을 때는 “위탁자”와 관련된 채권, 채무관계가 종료된 후에 반환한다.

제13조(규정의 준용)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군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및 「군산시 하수도 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계약기간) 이 계약의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15조(계약의 승계 등)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이전에 “위탁자” “수탁자” 쌍방이 그 상대방에게 본 계약의 해약 전까지 변경을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에 본 계약은 1년마다 동일한 조건으로 계속되는 것으로 한다. 단, “수탁자”는 계약만료 1개월 이전에 보증보험증서(이행지급보증증권)를 갱신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별도의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으며,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계약을 계속되는 것으로 한다.

년 월 일

위탁자 : 군산시수도사업소장

(인)

수탁자 : 주소 군산시

(인)

[별지 제10호서식]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년
군산시 수도과 수도계량기 검침원 채용 서류 제출 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① 수집목적	군산시 상·하수도 검침원 채용
② 제공받는 기관	군산시 수도과
③ 이용 목적	군산시 수도과 검침원 채용
④ 제공 항목	이름, 성별, 생년월일, 전화번호, 지원신청서, 자기소개서
⑤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서 작성일로부터 (근무 종료 시)
⑥ 생년월일(성별) 및 민감정보 처리에 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 . .

성명

(서명 또는 인)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위탁업무)</p> <p>1. 수도계량기 검침 및 점검업무</p> <p style="padding-left: 20px;">○ 공동 및 일반주택의 상수도 계량기를 정례 검침일에 검침하여 지침 및 사용량을 계량기 검침부에 기록하여 군산시 수도사업소장(이하 “<u>갑</u>”이라 함)에게 제출하는 업무</p> <p style="padding-left: 20px;">○ 수도계량기 정상 여부 점검업무(불 회전, 문자판불명, 칩탈락, 유리파손, 동파 등 이상이 있을 때는 “<u>갑</u>”에게 즉시 통지하는 업무)</p> <p>2. 고지서 교부</p> <p style="padding-left: 20px;">○ 공동 및 일반주택의 상·하수도요금·물 이용부담금 고지서 및 독촉장(계고장포함) 교부</p> <p>3. 기타 부대업무</p> <p style="padding-left: 20px;">○ 급수사용자 명의변경 및 급수업종 변경</p> <p style="padding-left: 20px;">○ 수용가 민원사항(검침, 부과착오) 처리 및 통지</p> <p style="padding-left: 20px;">○ 상·하수도 사용료(체납 포함) 징수 독려</p> <p>제3조(검침원의 자격)</p> <p style="padding-left: 20px;"><u>군산시 시민으로서 수도검침을 희망하며 사무능력이 있는 63세</u></p>	<p>제2조(위탁업무)</p> <p>1. -----</p> <p style="padding-left: 20px;"><u>가.</u> -----</p> <p style="padding-left: 40px;">-----</p> <p style="padding-left: 40px;">-----</p> <p style="padding-left: 40px;">-----</p> <p style="padding-left: 40px;">-----</p> <p style="padding-left: 40px;">----- <u>“위탁자”</u> 라 -----</p> <p style="padding-left: 40px;">-----</p> <p style="padding-left: 20px;"><u>나.</u> -----</p> <p style="padding-left: 40px;">-----</p> <p style="padding-left: 40px;">-----</p> <p style="padding-left: 40px;">----- <u>“위탁자”</u> -----</p> <p style="padding-left: 40px;">-----)</p> <p>2. -----</p> <p style="padding-left: 20px;"><u>가.</u> -----</p> <p style="padding-left: 40px;">-----</p> <p style="padding-left: 40px;">-----</p> <p style="padding-left: 40px;">-----</p> <p>3. -----</p> <p style="padding-left: 20px;"><u>가.</u> -----</p> <p style="padding-left: 40px;">-----</p> <p style="padding-left: 20px;"><u>나.</u> -----</p> <p style="padding-left: 40px;">-----</p> <p style="padding-left: 20px;"><u>다.</u> -----</p> <p style="padding-left: 40px;">-----</p> <p>제3조(검침원 선발)</p> <p style="padding-left: 20px;"><u>1. 군산시 시민으로서 수도검침을 희망하며 사무능력이 있는</u></p>

이하인 자로서 (만 63세에 달한 자는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포함) 관할지역내에 거주하며 책임감과 사명감이 있는 자 중에서 사무능력이 있고 관할지역 읍·면·동장의 추천(별지 제2호 서식)을 받은 자로 하며, 관할지역에 검침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인접 지역의 희망자를 거주지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선발한다.

<후단 신설 2014.12.26>

- 1. 삭제
- 2. 삭제

<신 설>

제5조(위탁수수료의 지급) 1. 위탁수수료는 월별로 수탁자의 업무처리 건수를 검수 하여 위탁수수료를 정산 지급한다. 공동주택은 검침 전수당 350원, 일반주택은 검침 전수당 800원으로 한다. 또한 공동주택의 경우 계량기가 옥내에 설치된

60세 이하인 자로서 (만 60세에 달한 자는 당해연도 12월31일까지로 함)

공고일 현재 검침 해당지역 (읍·면·동)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지원자를 우선 선발하고 거주자 미달시 인접 거주자, 기타 지역 거주자 순으로 선발하되, 모집 대상 인원의 1/3은 저소득층 지원자를 우대 채용한다(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정 중 저소득층 자립지원 고려)

- 2. 검침원 지원 신청자는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자기소개서(별지 제2호서식), 개인정보이용동의서(별지 제10호서식), 취업용 건강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수수료의 지급) --.

곳은 일반주택의 검침수수료에
 따르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검
 침수수료 외에 검침구역별 여
 건 등을 고려하여 매월 50,000
 원부터 150,000원까지의 교통
 보상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2. 3. (생략)

4. 위탁수수료는 매월 고지서
 배부 및 익월분 검침 완료 후
 수탁인(이하 “을”이라 함)이
 청구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7조(업무수행 중 책임한계) 위
 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을”
 의 업무 및 책임 한계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을”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
 어 “갑”의 제반 관계규정과
 “갑”의 요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을”은 업무수행 중 제3자에
 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을”
 이 단독으로 책임을 진다.
3. “을”의 검침원 업무수행 중
 발생한 제반 안전사고는 “을”

 -----.

2. 3. (현행과 같음)

4. -----

 ----- “수탁자” -----

 --.

제7조(업무수행 중 책임한계) -
 ----- “수탁
 자” -----
 -----.

1. “수탁자”는 -----
 “위탁자” ----- “위
 탁자” -----
 -----.
2. “수탁자”는 -----
 ----- “수탁
 자”가 -----.
3. “수탁자” -----
 ----- “수탁자”

인 책임을 진다.

4. “을”은 업무수행에 있어 본 계약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수용가에 제반 요청사항이나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갑”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손해배상) 1. “을”이 “갑”에게 다음과 같은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을”은 “갑”이 판정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가. (생략)

나.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상하수도 요금·물이용부담금 등 기타 수수료의 징수를 면하게 하거나 방조 또는 묵인한 때

2. 제1호에 따른 손해배상은 “갑”의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계약) 1. “갑”과 “을”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서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생략)

제11조(계약의 해약) 1. “을”은 본인의 사정에 의하여 검침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1개월 전에 위탁 계약해지신청

가 _____.

4. “수탁자”는 _____

_____ “위탁자” _____.

제8조(손해배상) -- “수탁자”가 “위탁자” _____
_____ “수탁자”는 “위탁자”가 _____.

가. (현행과 같음)

나. _____

2. _____ “위탁자” _____.

제10조(위탁계약) -- “위탁자”와 “수탁자”가 _____

_____.

2. (현행과 같음)

제11조(계약의 해약) -- “수탁자”는 _____

서 별지 제5호서식을 “갑”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갑”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기간중이라도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가. 계약이행 상대가 본 계약 조항대로 이행 가망이 없다고 “갑” 이 인정할 때

나. “을” 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때

다. “을” 이 “갑” 이 요구하는 서류 제출 기타 협조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거나 고의로 지연한 때

라. “갑” 이 정당한 이유로 본 계약의 해약을 요구하여 “을” 이 그 정당성을 인정할 때

마. (생략)

바. “을” 이 통·리장의 직에서 해임된 때

사. “을” 의 업무소홀 및 과실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유서를

----- “위탁자” -----
-----.

2. “위탁자” 는 -----

-----.

가. -----

-- “위탁자” 가 ----

나. “수탁자” 가 -----

다. “수탁자” 가 “위탁자” 가-----

라. “위탁자” 가 -----

“수탁자” 가 -----

마. (현행과 같음)

<삭제>

바. “수탁자” -----
-

료된 후에 반환한다.

제14조(신분증 발급) 수용가를 방문하여 검침 시 신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갑”은 “을”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분증을 발급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기재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5조(계약기간) 1. 본 위탁검침 계약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제1항의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이전에 “갑” “을” 쌍방에서 그 상대방에게 본 계약의 해약 전 까지 변경을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에 본 계약은 1년마다 동일한 조건으로 계속되는 것으로 한다. 단, “을”은 계약만료 1개월 이전에 보증보험증서(이행지급보증증권)를 갱신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별도의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으며,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추천서는 계속되는 것으로 한다.

3. (생략)

-----.

제14조(신분증 발급) -----

----- “위탁자”는 “수탁자” -----

-----.

제15조(계약기간) -----

-----.

2. -----
----- “위탁자” “수탁자” -----

----- “수탁자” -----

----- 계약은 -----
-----.

3. (현행과 같음)